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65226 판결 [이득상환금청구]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나652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2119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12.

판결선고 2024. 5. 24.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가단21194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23. 10.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송승훈, 판사 이종채